

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6. 1. 24.] [법률 제20093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 - 총괄) 044-202-3456, 3455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(노인학대·인권)) 044-202-3452, 3453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(주거복지)) 044-202-3459, 3454
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(재가복지)) 044-202-3523, 3515
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(의료복지)) 044-202-3523, 3518
보건복지부 (노인지원과(여가복지)) 044-202-3478, 3479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